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25호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 하였으며,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요구 시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그 밖의 불명확한 문장과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회의 규칙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장·부의장 선거를 기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함(안 제8조제1항)
- 나.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 다. “1일 1차 회의 원칙” 을 신설하여 명문화 함. (안 제15조)
- 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본 규칙에서 삭제함(안 제20조)
- 마. 해당 회기에 의결할 의안의 상정 시기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삭제, 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안 제출
 (개정) 위원회에 의안 회부 7일 후 의사일정 상정
- 바.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간 변경(안 제45조)
 (현행) 늦어도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단, 긴급을 요할 시 개의직전까지 신청
 (개정)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
- 사. 전자투표를 시행함에 따라 투표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 (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제49조)
 (현행) 표결참가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
 (개정) 표결참가는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 결정.
- 아. 회의록 자구의 정정 요구 기한 변경 (안 제55조)
 (현행)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개정)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
- 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규정 삭제함(안 제94조제5항)

차. 징계에 관한 회의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가능함을
규정함(안 제96조)

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 접수 시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8조제1항)

타. 기간의 계산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하여 기간계산을 명확하게 함 (안 제99조)

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명확화, 일반식 어투 배제, 한자어 순화,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제9조, 안 제13조~제16조, 안 제18조~제20조,
안 제22조~제30조, 안 제32조, 안 제34조~제36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제41조, 안 제43조~제51조, 안 제53조~제62조의2, 안 제64조~제73조,
안 제75조~제79조, 안 제81조~제83조, 안 제85조~제87조, 안 제89조~제98조)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규칙안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8. 27.(7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2조 중 “(이하 “의회”이라 한다)”를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임기초”를 “임기 개시 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한다.

제4조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선거후”를 “선거 후”로 한다.

제5조 중 “임기초”를 “임기 초”로, “나는”을 ““나는”으로,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의장”을 각각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일이상”을 “2일 이상”으로,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기명투표”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을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으로 하며, 제3항 중 “제1항”을 “제1

항의”로, “최고 득표자가 1인”을 “최고득표자가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최다선의원”을 “최다선 의원”으로, “2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그 중”을 “그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 각 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선거”를 “의장 선거”로, “선거일 보다”를 “선거일보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산”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한다.

제14조 중 “개의시를”을 “개의 시각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의시”를 “개의 시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2항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발의의원,”을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대표발의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제안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보고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끝나후”를 “끝난 후”로,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을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로 하고, 제2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이하 ”입법예고라“라 한다)”를 “(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고”를 “입법예고”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25조 중 “다른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찬성없이”를 “찬성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은 소관사항외”를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동의를한 자가”를 “동의를한 의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의 또는”을 “본회의 또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생략”을 “생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삼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아니한때”를 “아니한 때”로 하며, 제4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중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를 “의안이 의결된 후”로, “저촉되는”을 “어긋나는”으로,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를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령 이나”를 “법령이나”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그외의”를 “그 외의”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등단하여”를 “발언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단하도록”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를 “의원의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로, “성질에 반하여서는”을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금지시킬”을 “금지할”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초과 할”을 “초과할”로, “질의보충발언”을 “질의·보충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1조 중 “의견자가”를 “의견을 가진 의원이”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끝날때까지 의장석에”를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의원2인이상”을 “의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을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를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후”를 “접수 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마다 3인”을 “때마다 3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표결할”을 “표결을 선포한”로 한다.

제47조 중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를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의장은 표결할”을 “표결할”로, “결정한다.”를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의원중에서 약간인”을 “의원 중에서 몇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른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의제”를 “같은 의제”로, “수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정안 보다”를 “수정안보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의사 일정”을 “의사일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서명 날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 중 “복사등”을 “복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개”를 “전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회의록 작성 기준 및 발간·보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58조의 제목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를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로 한다.

제59조의 중 “동의자외 1인이상”을 “동의자 외 1명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조례안,”을 “조례안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심사함에 있어서”를 “심사할 때”로,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를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동일의제”를 “같은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문1답”을 “일문일답”으로 한다.

제62조의2 중 “발언 할”을 “발언할”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부동수일 때에는”을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 부터”를 “(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때”를 “열 때”로, “경비”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용 지급”을 “비용지급”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를 “(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제57조 및 제64조”를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결과”를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기전”를 “되기 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안건의”를 “안건이”로, “심사 경과”를 “심사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할”을 “추가할”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를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비밀참고”를 “비밀 참고”로, “열람의”를 “열람”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2조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있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심사케한”을 “종합심사하게 한”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5분의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회의 중”을 “회기 중”으로,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지”를 “요지, 질문방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4시간전”을 “24시간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진행 되도록”을 “진행되도록”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79조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피심 의원”을 “피심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기일내”을 “기일 내”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때까”를 “때까지”로 한다.

제86조제2호 중 “간행물”을 “간행물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음식물의 섭취와 객연”을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휴대반입”을 “휴대 및 반입”으로 한다.

제87조 중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을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으로,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를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방청권은”을 “방청권의”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교육기관 그 밖의 체”를 “교육기관과 그 밖의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 받은 자는”을 “교부받은 사람은”으로, “방청 할”을 “방청할”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기가 있는 자”를 “술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관계직원”을 “관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 어야 한다.

제92조제4호 중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을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 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신문”을 “신문과”로, “서적류의 열 독행위”를 “서적류를 읽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장”을 “의 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 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녹음·녹화등)”을 “(녹음·녹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를 “(본회의장에서는 생중계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방청석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는~~ 자는 매회기초”를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는 자는” 을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 중 “외의에 한정한다.)”를 “회의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를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위원중”을 “소속 위원 중”으로,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찬성의원”을 “찬성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 제목“(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을“(징계의 요구·회부시한 및 심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동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를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동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폐회기간중에”를 “폐회기간 중에”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9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 제목“(심문 및 변경)”을“(심문 및 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의원”을 “관계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스스로”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기준)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u>」 제5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u>고흥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u>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등록) <u>고흥군의회의(이하 "의회"이라 한다)</u> 의원은 <u>임기초에</u> 당선증서를 <u>의회사무과장에게</u>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조(의석배정) ① (생략) ② <u>총선거후</u>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u>사무과장이</u>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4조(개회식) 의회는 <u>집회일에</u>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u>총선거후</u>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u>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u>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83조-----</p> <p>제2조(등록) -----(이하 "<u>의회</u>")라 한다) --- <u>임기 개시 전</u></p> <p>제3조(의석배정) ① (<u>현행과 같음</u>) ② <u>총선거 후</u> -----</p> <p>제4조(개회식) ----- <u>총선거 후</u> ----- <u>선거 후</u>-----</p>

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실시한다. 단,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

-----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⑤ -----
----- 2
일 이상 -----
----- 해당 의원-----.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
----- 기표
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

② -----

----- 5일 전 -----
--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

③ 제1항의 -----
----- 최
고득표자가 1명-----

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신 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2명

④ 최다선 의원
2명 이상
그중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
개시 후

② 의장 선거----- 선거일보다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④ (생략)

제13조(회기) ① (생략)

② 회의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집회 후 -----
-----.

③ ----- 개산-----.

④ ----- 회기 중 -----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개의) -----

----- 개의 시각을 -----
-----.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의 시각은-----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신 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 중

----- 1 이상
-----.

제16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
----- 1 이상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의안의 제출시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9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제안한다. 다만, 의원의 의안 발의 요건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②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 대표발의의원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고라“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4조(심사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예고”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간 내-----

-----.

제25조(위원회의 제출의안) ----

----- 다른 위원회-----
-----.

제26조(동의의 의제성립) ----

----- 1명 이상-----
-----.

제27조(수정동의) ① -----

----- 1 이상-----
-----.

② -----

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생략)

제2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번안) 번안동의를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 찬성 없이 -----.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

----- 동의를 한 의원이

② ----- 본회의 또는 -----

제29조(번안) -----

----- 2 이상-----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삼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때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단,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수 있다.

③ (생략)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

제30조(안건심의)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

아니한 때

③ (현행과 같음)

④ 2건 이상

제32조(의안의 정리) 의안이 의결된 후 어긋나는 숫자, 그 밖의

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 규정 등이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발언의 허가) ①·② (생략)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

제34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

-- 법령이나 -----

----- 10일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언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외의 -----

제36조(발언의 장소) ① -----

발언대에서 -----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발언은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

② -----
-----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

제38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의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

② -----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금지할 -----
-----.

제40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
----- 초과할
----- 질의·보충발언-----

-----.

② -----

----- 범위-----
-----.

제41조(보충보고) -----
----- 의견을
가진 의원이 -----

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생략)

제4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 의원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제45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

제43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

-----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2명 이상-----

제45조(5분 자유발언) ① -----

-----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범위-----
----- 심의 중인 안건과 청
원, 그 밖의 -----

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개 의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발언취지의 원고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는 매 본회의 시마다 3인 이내로 하며,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표결의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이 표결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전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7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

② -----
-----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접수 후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때마다 3명 -----
----- 1명 -----

제46조(표결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표결을 선포한 -----

제47조(표결의 참가) -----

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표결방법) ① 의장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 ④ (생략)

제50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생략)

④ 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

제48조(의사변경의 금지) -----

대하여 -----

제49조 ① 표결할 -----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원 중에서 몇 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른 의원 -----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 ----- 여러 개 -----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생략)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의회윤리특별위원회 (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

<신설>

- 제53조(회의록의 작성) ① (생략)
1. 2.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수정안보다 -----.
3. ----- 여러 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윤리특별위원회 -----

-----.

제52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제53조(회의록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의사 일정

4. ~ 15. (생략)

② (생략)

제5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생략)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3. 의사일정

4.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2명 이상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공무원, -----
-----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 -----
----- 부터 5일 이내에 -----
-----.

② -----

----- <단서 삭제> -----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략)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략)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복사 등 -----

③ -----

----- 전제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록 작성 기준 및 발간·보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의2(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제58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생략)

제5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
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
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
가 된다.

제60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
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
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
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

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
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
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
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
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
을 경우

제58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현행과 같음)

제59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동의
자 외 1명 이상-----
-----.

제60조(위원회의 제안) ① -----

----- 조례안과 -----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 -----
----- 심사할 때 -----

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준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6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문위원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공무원에게

제62조(위원의 발언) ①

같은 의제

②

일문일답

제6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발언할

제6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1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연석회의) ①·② (생략)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② -----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

제65조(연석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소관 위원회 -----

제66조(공청회) ① -----

-----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② ----- 열 때 -----
----- 경비 -----

③ ~ ④ (현행과 같음)

비용지급 기준은 「고흥군의회
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
사)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주민조례발
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
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략)
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7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6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
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
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비용지급-----
-----.

제6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
사) ① -----
----- (이하 “주민조례
발안법”이라 한다) -----

제6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결과,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④ (생략)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② (생략)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제7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③ -----
----- 되기 전-----

제68조(위원장의 보고) ① -----
----- 소관 위원회-----
안건이 -----

----- 심사경과-----

② ----- 다른 위원-----

③ -----
----- 추가할-----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명 또는 날인-----

제7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
----- 회의록, -----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예산안 또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때 예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명 이내의 자를 자문 위

- 비밀 참고----- 열람 -----

제71조(예산안 심의) ① -----

--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간 내-----

④ -----

----- 사람을 -----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자문 위원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⑥·⑦ (생략)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생략)

제7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⑤

각호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1 이상 -----

제73조(예산안의 의결) ① -----
----- 있는 -----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결산의 심사) ① -----
----- 소관 상임위원회 -----
-- 소관 상임위원회 -----

②

종합심사하게 한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7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48시간 전까지(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질문 개시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별로 제3항의 질문요지서 제출순서

5분의 1 이상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 ----- 회기 중 -----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

② (현행과 같음)

③ ----- 요지,
질문방식 -----

④ ----- 24시간 전-----

⑤ -----

⑦ (생략)

제78조(군수 등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생략)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9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발언을 할 수 있다.

제81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군수 등에 대한 서면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일 이내 -----
----- 기간 내 -----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군수 등의 발언) -----
-- 관계공무원 -----

제81조(사직) -----
----- 서명 또는 날인 -----

② -----
----- 폐회 중 -----

③ (생략)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
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
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
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략)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
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5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 피심의원 -----

② -----

----- 기일 내 -----

제8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일 내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5조(경호) ①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
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
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6조(회의의 질서유지) (생략)

1. (생략)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
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
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
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킁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
대반입
6. (생략)

제8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
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때까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회의의 질서유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간
행물 및 -----

3. 의장 또는 위원장 -----

4.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
행위
5. ----- 휴대
및 반입
6. (현행과 같음)

제8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
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
-----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
할 수 없다.

제89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의 종별) ① (생략)
② 방청권은 종별은 일반방청
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
로 한다.

제90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생략)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
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
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1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

의장이 허가한 사람 -----
-----.

제89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의 종별)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청권의 -----

-----.

제90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

-----.
③ -----

----- 교부받은 사람은
----- 방청할-
-----.

④ (현행과 같음)

제91조(방청의 제한) ① -----
----- 해당하는 사람-

아니한다.

1. ----- 휴

대한 자

- 2. 주기가 있는 자
- 3. (생략)
-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신 설>

제92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생략)

- 1. ~ 3. (생략)
-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대한 사람

-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 3. (현행과 같음)
- 4. -----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
----- 관계 직원-----

③ 의장 또는 위원장-----

----- 소지한 사람----- 제한할 -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2조(방청인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하는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3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생략)

제9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

④ -----
하는 사람은 -----
-----.

제93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

----- 회의
에 한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
-----.

② ----- 소속 위원 중-----

----- 본회의-----
-----.

③ -----
-----.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 이상

찬성 의원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95조(징계의 요구·회부의 시한 및 심사기간) ①

알게 된

같은 조 제3항

3일 이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
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
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
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
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97조(심문 및 변경) ① 윤리특
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
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

----- 같은 조
제3항-----

----- 알게 된
----- 5일 이내-----

----- 폐회기간 중에 -----

----- 3일 이내-----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94조제
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
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
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의사의 비공개) -----

-----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
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7조(심문 및 변명) ① -----

----- 관계 의원-----

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신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스스로

제9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지체 없이 -----

---.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기간의 계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 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